

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안내문

※ 본 안내는 신속항원검사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. 제품에 따라 사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, **제품별 사용설명서를 따라 정확하게 검사**하시기 바랍니다.

검사전 준비사항

- 손을 깨끗이 씻고, 완전히 말립니다. *일회용 장갑 사용 권장
- 제품 구성품을 확인하고, 평편한 곳에 꺼냅니다.
- 시험단계에 따라 제품 포장지를 제거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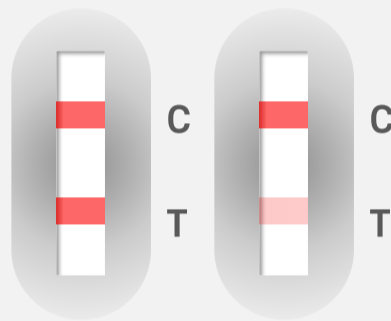
검사시 주의사항

- 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.
-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검사반응 시간*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*15분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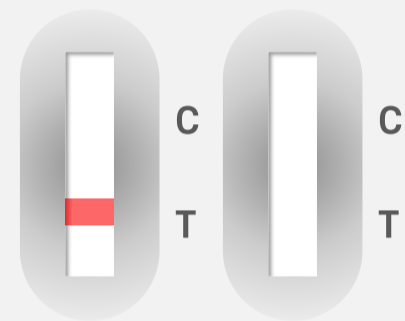
검사 결과 확인



음성 대조선(C라인)만 나타난 경우(1줄)



양성 대조선(C라인)과 시험선(T라인) 모두 나타난 경우(2줄)



무효 대조선(C라인)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
*재검사 필요

검사결과 양성이면?

-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,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합니다.
-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(비인두도말 검체 채취)를 받습니다.
-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합니다.

[이동 시 주의사항]

-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착용,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
-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,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

검사결과 음성이면?

- 사용한 구성품을 모두 폐기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,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.
-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합니다.
-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유전자검사(PCR) 우선순위 대상

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

우선순위 검사대상

증빙자료 예시

만 60세 이상 고령자

만 60세 이상 고령자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※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

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

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
검사가 필요한 자

의사의 소견서,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
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
밀접접촉자(확진자와 접촉한 자)

검사대상 지정 문자(밀접접촉자 통보 문자),
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(유치원, 어린이집) 확인서[†] 등

격리대상 접촉자(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*
구성원인 경우, 해당 시설 접촉자)

격리통지서,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, 격리 통보 문자

*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
장애인복지시설

해외입국자(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)

입국심사확인증(법무부 발급), 항공권 등
해외입국자(3일 이내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※ 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^{††}에 한함.
단기체류 외국인(B1~2, C1, C3~4 비자)은 제외

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

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^{†††} 종사자

재직증명서, 사원증, 근무확인서 등

입영 장정

입영(소집)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

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
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또는 간병인) 1인

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, 문자 등

※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

신속항원·응급선별 검사 양성자

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, 개인용) 양성자,
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

의사의 소견서(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), 양성 확인된 제품* 등
* 밀봉하여 제출

† 「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(교육부),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(복지부)

†† 장기 비자: A1~3, D1~10, E1~10, F1~4, F6, H1~2, G-1

†††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*

*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